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2023년 2월 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문화재단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합운영하고자 함.
-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경북문화재단의 수행사업에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추가함(안 제3조)
- 경북문화재단의 임원의 수, 종류, 임기, 임면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북문화재단의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가.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바 있으며,
-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지역 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명시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조 사업조항에 제3의2호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추가하여 문화재단에서 콘텐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보입니다.
- 안 제5조에서 문화재단의 임원의 수, 종류, 임기, 임면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두 기관간 통합에 따른 기관구성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는 문화재단의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초기 각 기관간 양립에 따른 과도기 현상과 재단 대표권에 대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 부칙 제1조에서 조례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의 구조개혁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 제2조에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었고, 부칙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경상

북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기관통합과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 종합의견

- 경북문화재단은 경북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1일 설립되었으며,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경북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경북 문화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융복합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0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 그동안,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19일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안)’을 통보하고, 실국별 통합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문화, 산업, 교육, 복지, 호국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중 문화분야 구조개혁안인 본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만 의회로 제출(2023.1.20.) 되었습니다¹⁾.
- 이 두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정책에 부응하고, 경북도차원의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먼저 문화분야의 양 기관의 통합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순수예

1)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중 문화분야를 제외한, 산업분야 1.2차 회의개최(2022.7월 8월) 및 통합방향 설정(2022년 10월), 교육분야, 1차회의(2022년 8월) 이후 중장기추진 결정, 복지분야 1차회의(2022년 8월), 설명회 개최(2022년 9월), 호국분야, 1차회의(2022.8월) 이후 관계기관 및 도의회 반대 의견으로 장기검토과제로 전환됨.

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²⁾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³⁾에 근거하여 순수예술보다는 산업지원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설립취지가 상이하고, 통합으로 인해 2019년 당시 콘텐츠진흥원의 수행사업이 ‘문화콘텐츠’사업에서 ‘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 확대되어 조례개정⁴⁾이 이루어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북도내 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국비사업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두 기관의 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에 관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2011년 9월 26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1년 11월 20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2019년 조례 개정,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문화콘텐츠산업’중심에서 ‘융복합 콘텐츠산업’으로 사업범위 확대할. 사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문화산업 중심’에서 정보산업과 창조산업까지 포함하는 ‘정보문화산업중심’으로 사업 분야 확대.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